

한국인권학회 정관

2018년 2월 5일 제정
2021년 8월 26일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 단체의 이름은 한국인권학회(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, KAHS)라 한다.

제 2 조 (소재)

- ① 한국인권학회(이하 '학회'라 한다) 사무국의 소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회칙에 준하고 본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는다.
- ③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)

학회는 인권에 관련된 학술 연구, 조사를 통해 학문 발전과 그리고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제시 등을 위한 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지식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

학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.

1. 인권에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조사
2. 학회지 발간 등 출판
3. 연구발표회,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
4.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
5.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구분)

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및 기관(단체)을 회원으로 하고,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(단체)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6 조 (개인회원)

1. 개인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2. 학생회원: 인권에 관심있는 대학(원)생
3. 특별회원: 인권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을 지닌 사람으로 총회 의결을 통해 위촉된 사람

제 7 조 (기관/단체회원)

기관(단체)회원은 정관 제 3 조에 제시된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및 기관, 도서관, 그리고 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각 대학의 학과 및 각 학회를 비롯한 학술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,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.

제 8 조 (회원의 의무 및 자격 정지)

- ① 학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③ 회비의 액수와 납부방식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 9 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
1.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, 저술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2. 학회지를 비롯하여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.
3.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4. 기관(단체)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제 3 장 기구 및 임원

제 10 조 (임원의 구분)

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 명, 혹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회장을 둘 수 있다.
2. 부회장 약간명
3. 지회장 약간명
4. 직무 이사를 포함한 이사 다수
5. 감사 2 명

제 11 조 (임원의 자격, 선출방법, 임기)

- ① 모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, 차기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③ 차기회장은 본 회칙 제 4 장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
- ④ 당연직 부회장이 아닌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⑤ 회장은 전임회장을 학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.
- ⑥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.
- ⑦ 고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
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.
- ③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회장은 총무, 연구, 편집, 대외협력 등 직무 이사를 각각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. 각 담당 이사는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각 위원회에 약간 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- ④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- ⑤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 13 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직무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·집행한다.

제 14 조 (특별위원회)

- ① 학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,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지명 한다.

제 15 조 (분과위원회)

- ① 학회는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4 장 차기 회장 선거관리

제 16 조 (선거관리위원회)

- ① 학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1 명을 회장이 위촉하며,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·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 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.
-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.

제 17 조 (후보 등록)

- ①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 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. 단 보궐 선거시에는 선거일 20 일전까지 등록해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서를 접수하는 즉시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제 18 조 (선거인 명부 작성 및 공지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현재의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에 따라 선거홍보물의 양식과 배포방법, 그리고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.

제 19 조 (선거권자 및 선거 방법)

- ① 선거권은 선거일 당일기준 연체된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회원이 갖는다. 다만, 신입회원은 가입 년도 다음 해의 선거에서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직접투표와 (전자)우편투표 (부재자 투표) 방식으로 선출되며,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(들)로 결정한다.
- ③ 차기회장의 투표결과는 총회에서 개표하고 발표한다.

제 5 장 회 의

제 20 조 (각종 회의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정회원 10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는 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주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 한다.
- ③ 학회는 연례 학술회의를 최소 연 1 회 개최한다.
- ④ 일반이사회는 일반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1 조 (총회의 권한)

- ① 총회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, 총회에 회부된 논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총회의 의사는 정회원 1/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6 장 재정, 회계 및 행정

제 22 조 (재정)

- 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학회 연구사업의 공제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23 조 (회계의 구분)

- ①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학회의 회계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- ③ 학회의 회계는 총무이사의 책임으로 하고 총무이사는 총회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24 조 (회계의 공개)
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을 공개한다.

제 25 조 (회계연도)

-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- ② 학회는 해마다 사업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1 부
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1 부
 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부

제 26 조(잔여재산의 처분)

본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 27 조 (행정)

학회는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, 간사,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올리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채택 직후 바로 시행한다.

제 2 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제 3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4 조 초대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